

# 목포해양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

[시행 2018.5.25.] [목포해양대학교 규정 제673호, 2018.5.25., 타규정개정]

제정 2016.10.24.(제597호)

타규정개정 2018.05.25.(제673호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76조의2에 따른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입학학생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취업실습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본교의 교원 및 장애학생 이해 당사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. <개정 2018.5.25.>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심사청구 등)**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“특수교육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신청한 경우 관련 기관(부서)장은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(부서)장의 결정이나 특수교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1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

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부칙** (제597호, 2016.10.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제673호, 2018.5.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앞 면)

심 사 청 구 서			
① 사 건			
② 청구인	성명		성별
	주소	(전화번호: )	
	소속		
③ 피 청구인			
④ 재심청구의대상이되는 처분 내용			
⑤ 재심청구의취지			
⑥ 재심청구의이유			
⑦ 기타입증자료			
⑧ 근거법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		
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.			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			
청구인			(서명 또는 인)
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			



